

도서관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저작권법」 제31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rospects of Digital Collections' Fair Use: Focused on the Article 31 of Copyright Act

김 수 진 (Su-jin Kim)*

김 유 승 (You-se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의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discuss on legal prospects of digital collections' fair use through an analysis of treaties and legisl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Based on analysis of leading researches and literature, it discusses legal principles of fair use and defines digital collections' concept and types. For understanding the actual legal system on fair use,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s which are presented in treaties, such as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Copyright Convention', each nation's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Especially, a legal dispute between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and Eugen Ulmer KG, which debates on library's rights for digitizing their collections without the rightholder's permission, is analyzed. As a result, this study analyzes its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in Korea.

키워드: 공정이용, 저작권법 제31조, 디지털 장서, 유럽사법재판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
Fair Use, Article 31 of Copyright Act, Digital Collection,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opyright Act, Intellectual Property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dkssudkim4@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5년 8월 17일 논문심사일자 : 2015년 8월 27일 게재확정일자 : 2015년 9월 7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151-175, 20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3.151]

1. 시작하는 글

정보 공유의 시대다. 행정정보에서부터 학술 정보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넓은 정보의 공유와 확산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이끄는 혁신과 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적 의미와 달리, 『저작권법』을 비롯한 실정법의 체계 아래, 정보자원에 접근하고 공유할 권리는 또 다른 권리들과 끝없이 경합하고 있다.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만인을 위한 불편부당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하는 도서관의 권리와 의무는 정보자원의 소유자, 즉 저작권자의 권리와 경합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저작권 관련 법령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12137호) 역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반된 권리 간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노력 앞에 놓인 문제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첨예화 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자원의 공유를 통해 공익에 복무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와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제31조를 통해 도서관에서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31조는 공익적 행위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저작재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3조부터 제44조 중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을 규정한 제25조와 함께 가장 복잡하

고 세부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제한과 예외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지식재산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이고 합법적인 원칙”(The 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2011)이라는 점에서 도서관 본연의 사명 완수를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은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한 도서관에서의 저작재산권 제한이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다수의 연구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 관련 법제도가 디지털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에 조응하지 못하여,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의 정보평등권과 접근권 보장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박영희 2008, 201-203; 배대현 2010, 156-158; 오일석 2013, 585-589).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2001/29/EC) 제5(3)(n)조의 해석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보다 앞서는 공익을 위한 도서관 보유 장서의 디지털화를 허용한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의 최근 판례(Case C-117/13)는 이러한 비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의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화와 그 허용 범위에 관해 판결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하고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도서관 공정이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저

작권자의 권리제한 및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와 디지털도서관과 관련한 법적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이용과 저작권과의 형평성에 입각하여 분석한 이순자(1988)의 '저작권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 권리제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디지털도서관 시대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힌 정진근, 김형각(2010)의 연구, 각국의 저작권 법령에 나타나 있는 권리제한 규정을 비교분석한 윤희운(2010)의 연구, 「저작권법」상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 규정을 분석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제안한 김종철, 김영석(2012)의 연구, 정보접근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저작권법」의 발전사를 고찰하고 이용자의 접근권 확대를 위해 도서관의 복제·전송 범위를 도서관 밖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오일석(2013)의 연구, 도서관 면책범위를 분석하고 공정이용을 판단하는 4가지 기준과 그에 관한 국외 판례를 제시하며, 공정이용 조항의 영향에 대해 논한 이호신(2014)의 연구 등이 있다.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국가적으로 추진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및 2000년 「저작권법」의 디지털 복제 조항 신설이 계기가 되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디지털도서관 구현을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이 계약뿐이므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홍재현(1999)의 연구, 도서관 등 정보센터의 디지털화와 공유를 논한 윤선영(2000)

의 연구, 디지털도서관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을 분석한 김형렬(2001)의 연구, 전자도서관 관련 법적 장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도서관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제안한 박영희(2008)의 연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복제권 및 전송권을 중심으로 국내의 저작권 법령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정경희, 이두영(2001)의 연구, 현장에서 사서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을 제시한 홍재현, 정경희, 이호신(2005)의 연구, 국내 「저작권법」에서 공유와 보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경제적 수익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디지털 저작물의 보존 문제가 대두되었음을 지적한 배대현(2010)의 연구 등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주제 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정이용을 지향하는 법제도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3. 이론적 배경

3.1 공정이용의 범위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 외에 다른 이들에게 부여된 특권이다. 저작권자의 독점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Rosemont Enterprises, Inc. v. Random House, Inc. and John Keats, 366 F.2d 303),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Patterson 1992, 249). 이것은 「저작권법」의 엄

격한 적용이 오히려 「저작권법」이 목적하는 창작성을 억제하는 경우, 그 엄격한 적용을 법원이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로서, 그 사용이 공정한 이용일 경우 불법적인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Iowa State University v. American Broadcasting, 621 F.2d 57).

미국의 공정이용에 대한 법리는 1841년 메사추세츠 주법원(Circuit Court, D. Massachusetts)의 ‘폴섬 대 마쉬(Folsom v. Marsh, 9 F. Cas. 342)’ 판례를 통해 정립된다. 이 재판을 이끌었던 윌리엄 스토리(William W. Story) 판사는 실정법 상 저작권 이론에 따라, 새로운 책을 만들어낸다면 다른 저자의 저작물 요약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는 이 사건에서 공정이용의 원칙을 언급하며 저작권 침해가 반드시 복제의 양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원작 판매에 대한 중요도도 고려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869년 ‘로렌스 대 다나(Lawrence v. Dana, 15 F. Cas. 26)’의 판례를 통해서다(Hoberman 1987, 577; Kaplan 2008, 67).

이외에도 1884년의 ‘버로우-길스 석판인쇄사 대 사로니(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111 U.S. 53)’, 1985년의 ‘하퍼와 로우 대 내셔널 엔터프라이즈(Harper & Row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등 공정이용에 관한 대표적 판례들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학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공정이용이 합리적 이용이라는 것, 저작물의 합리적인 사용이 헌법상의 권리라는 것, 공정이용의 원칙은 공익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남용에

대한 대항적 무기라는 것을 밝혔다(Patterson 1992, 265-266).

미국의 공정이용과 유사한 개념의 영국의 ‘공정대우(fair dealing)’ 법리는 1911년 영국 「저작권법(1 & 2 Geo. 5, Ch. 46)」에 의해 최초로 성문화되었고(Davies 2002, 38), 미국 의회는 배타적 저작권과의 균형을 위하여 공정이용을 197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성문화하였다(Patterson 1992, 264). 1976년 미국 「저작권법」(17 U.S.C. §§ 101-810)의 제107조는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이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용의 목적 및 특성, 원 저작물의 성격, 원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실질성, 그리고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3.2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

『문헌정보학용어사전』(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10)은 디지털 형식의 정보자원을 디지털 자원,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장서 등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디지털 유형으로 수집, 저장하고 검색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모든 정보자원을 통칭하는 가장 포괄적 개념이 디지털 자원이라면, 디지털 자산은 실물 가치나 상업적 이익을 지닌 정보자원의 특징을 지칭한다. 도서관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용어인 디지털 장서가 이용 및 보존을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거나 변환된 정보자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장서는 디지털 자원이자 자산일 수 있다.

Brazier(2013, 4)는 장서의 개념이 물리적 소유권에서 접근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장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2007, 90)은 이를 "디지털 형태의 자원을 어떠한 목적이나 기준에 따라 모아 놓은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윤희운(2007, 81)은 이와 같은 맥락의 개념을 디지털 장서의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디지털 장서를 "계약을 통해 접근권리를 획득한 웹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전자책 등을 포함"시키는 광의의 개념과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호스트 컴퓨터에 축적되어 있는 다종다양한 디지털 자료의 집성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장서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준에 따라 도서관이 수집, 보유, 관리하는 디지털 정보자원 일체를 의미하는가 하면, 협의적으로 디지털 형식의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하는 등 다중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장서의 법률적 정의 역시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저작권법」, 「도서관법」,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은 '디지털 장서'를 법률적 용어로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전자적 정보, 전자적 형태, 디지털 형태, 디지털 파일,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자료 등의 유사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배대현(2010, 171)은 이러한 용어의 혼용이 서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비롯된 차이일 뿐, 용어의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은 디지털 정보자원의 다양한 유형에 기인한다. 디지털 장서는 장서를 구성하는 자원의 생산 방식에 따라 본래 디지털 형태로 생산된 것과 아날로그(analogue) 형식으로 생산되었다가 차후에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과 다수의 연구자들은 전자를 태생적 디지털 혹은 디지털 생산(born-digital), 후자를 디지털화된(digitized) 자원, 사후 디지털 또는 디지털변환(reborn-digital, being digital)으로 구분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 2007, 90; 설문원 2005, 24-26; 이수상 2013, 38; Koulouris and Kapidakis 2012, 164).

같은 맥락에서 윤선영(2000, 40-41)은 태생적 디지털과 디지털화된 자원 대신 1, 2차 디지털 저작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과 동시에 그 자체로 창작성을 갖게 되는 저작물을 1차적 디지털 저작물로 정의하고, "인쇄매체로 존재하는 저작물을 스캐너 또는 키보드에 의한 입력 등으로 컴퓨터에 재입력함으로써 생성되는 저작물"을 2차적 디지털 저작물로 보았다.

한편 장덕현(2010, 429)은 이와 같은 생산 방식에 따른 구분과 달리 유무형의 형태적 차이를 기준 삼아, 디지털 정보자원을 물리적 매체로 출판되고 실체가 있는 객체로서 아날로그 전자자원¹⁾과 디지털 전자자원 모두를 포함하는 '물리적 포맷의 디지털 자원', 월드와이드웹을 통

1) 일반적으로 전자자원과 디지털자원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디지털은 0과 1의 2진수 기호의 비트(bit)를 사용하여 정보 표현하는 방식으로 연속적 신호 형태의 아날로그와 엄밀히 구분된다.

해 출판되거나 이메일 등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디지털 자원인 '온라인 자원', 기존 장서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화 프로그램의 결과로 생산된 자원인 '디지털화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기관 및 조직 업무과정에서 내부적 활용을 위해 생산한 온라인 문서는 해당 기관 및 조직의 기록으로 간주하여 온라인 자원의 범주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장서를 도서관에서 태생적 디지털 형태 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보유하거나 연계하여 구축해놓은 유무형의 정보자원으로 정의한다.

4.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법령분석

4.1 국제 조약

조약(treaty), 헌장(charter, constitution), 규

정(statute), 규약(covenant),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의정서(protocol), 각서교환(exchange of notes),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기관간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 등 조약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 모두가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이기 때문에 해당 조약에 가입할 경우 그 조약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다(최원목 2007, 41).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대표적인 다자 조약을 채택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국제적 저작권 조약의 근간이 되고 있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은 제9조에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대해 명시하고, 동조 제2항에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대한 예외는 특별한 경우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을 때 한하여 인정된다

<표 1>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대표적인 다자 조약

채택 연도	지식재산권 분야 다자 조약		분야	기탁처	대한민국 발효연도
	국문	영문			
1886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지식재산권	WIPO	1996
1971	세계저작권협약 (1971년 파리 개정)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지식재산권	UNESCO	1987
1994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통상·산업	WTO	1995
199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지식재산권	WIPO	2004
199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 1996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지식재산권	WIPO	2009

* 출처: 외교부.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information/bilateral/index.jsp?mofat=001&menu=m_30_50_40>. [online]. [cited 2015.3.15]. 특허청.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9306&catmenu=m09_03_01>. [online]. [cited 2015.3.15].

고 규정하였다. 제10조와 제10bis조에서는 자유 이용(free uses)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10bis조에서 공정한 관행(fair practice)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제13조의 제한과 예외 규정에서 회원국들은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불합리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은 제10조의 제한과 예외 규정에서 체결국은 통상적 이용 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자국의 법률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은 제16조의 제한과 예외 규정으로 체결국이 국내법에 저작권의 제한이나 예외를 제공할 수 있으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제10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통상적 이용 또는 권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로 한하여 제한이나 예외를 한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조약들은 각 국가가 통상적인 이용에 저촉되지 않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하여 각 국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조약을 체결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국내법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4.2 국외법

4.2.1 영국

가장 먼저 공정이용의 개념을 성문화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의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은 제28조부터 제76조까지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예외적 이용허락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중 제29조부터 제31조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공정대우(fair dealing) 규정이라 부른다. 제28조 제1항은 이들 규정이 저작권 침해 여부에만 관련되고, 특정 조항이 제한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제28조부터 제76조까지 이어지는 권리제한 규정은 법적으로 명시된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개념보다는 그 적용 범위가 좁다. 하지만 판례의 경향은 미국 법원과 유사한 내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병일 2009, 95).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에 관련된 조항은 제37조부터 제44A조까지이며, 여기에서 사서와 기록연구사에 의한 복제 및 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제37조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와 관련된 총칙, 제38조 사서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논문 복제에 관한 규정, 제39조 사서에 의한 발행 저작물의 일부 복제, 제40조 동일한 자료의 다량 복제물 제작에 대한 제한, 제40A조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물의 대출, 제41조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서가 행한 복제, 제42조 저작물의 대체를 위해 사서 또는 기록연구사에 의해 행해진 복제, 제43조 사서 또는 기록연구사에 의한 일부 미발행 저작물 복제, 제44조 수출

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을 위해 요청된 저작물의 복제, 제44A조 법적 납본 도서관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나 전자열람석을 위한 디지털 복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4.2.2 미국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circular 92)」은 제107조에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공정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106조와 제106A조가 명시한 저작권자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비평, 코멘트, 뉴스 보도, 교육, 학문,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경우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4가지 기준으로 첫째, 영리적인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적인 목적인지 등을 포함한 이용의 목적 및 특성, 둘째, 저작물의 성격, 셋째, 전체 저작물 중 이용된 부분의 양 및 실질성, 넷째, 저작물의 가치 또는 잠재적 시장에 대한 이용의 영향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108조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에 의한 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08조 제(a)항에는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에서 (b)항과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복제물을 1부만 제작하거나, 다음의 규정된 조건에 따라 복제물이나 음반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다고 하였다. 그 조건으로 (1) 복제나 배포가 직간접적으로 상업적 이익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 (2)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소장

물이 (i) 공중에 공개되어 있거나, (ii)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또는 이러한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가 속한 기관과 관계가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iii) 그 저작물의 복제 또는 배포에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되는 저작물에 나타나는 저작권 표시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표시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기술하는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 조항은 이용을 위한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를 복제의 범위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저작권제도에 있어 전반적으로 공익을 추구하고, 판례법 국가의 특성상 유권해석을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이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서계원 2010, 174).

4.2.3 독일

독일 「저작권법(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Urheberrechtsgesetz)」은 제16조 복제권, 제17조 배포권, 제19a조 공중전달권, 제24조 자유이용(Freie Benutzung)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유이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 동의 없이 공표 및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동법 제44a조부터 제63a조까지는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중 제52b조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존소의 전자열람석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다. 이를 살펴보면, 달리 반하는 계약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이거

나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기록보존소는 각 시설의 공간 내에 설치된 전자열람석에서 학술연구 및 개인적 연구를 위하여 소장된 공표 저작물을 공중전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의 단서 조항은 달리 반하는 계약 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전자열람석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의 동시접근은 해당 시설이 보유하는 부수를 넘어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중전달에 관하여는 적합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Directive 2001/29/EC)의 내용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4.2.4 유럽연합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법 외에도 유럽연합 지침의 구속을 받는다. 유럽연합의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 측면의 조정에 관한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이하,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는 저작권 관련 지침의 하나다.

이 지침의 전문 제34조는 회원국들이 가지는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교육 및 학문 목적,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와 같은 공공 기관의 이익, 시사 보도의 목적, 인용, 장애인에 의한 이용, 공공 안전을 위한 이용,

그리고 행정 또는 사법 절차상의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동 지침 전문 제40조는 회원국들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 비영리 시설의 이익을 위하여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한다. 다만 이러한 예외 또는 제한은 복제권에 포함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온라인 송신과 관련한 이용까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제44조에는 지침 상의 예외 또는 제한을 적용할 경우, 그러한 예외 또는 제한은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함을 적시하며, “예외 또는 제한이 권리자들의 적법한 이익을 해치거나 권리자들의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충돌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제2장은 권리 및 예외에 대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제2조에 복제권, 제3조에 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기타 대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제4조에 배포권, 제5조에 예외 및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2)조는 회원국들이 각 항목의 경우에 제2조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제5(2)(c)조에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기관, 또는 박물관에 의하거나,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정 복제 행위에 관해서는, 그러한 복제 행위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회원국들은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 교

육기관, 박물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행위가 비상업적일 경우 복제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자국법에 규정할 수 있다.

제5(3)조에서도 회원국들이 다음 각 항목의 경우에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 5(3)(n)조를 살펴보면 “조사 또는 개인 연구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그것들의 수집물에 표시된 구매 또는 이용허락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제5(2)(c)조에 언급된 시설의 지정 단말기에 의하여 공중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용도인 경우”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조사 또는 개인의 연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또는 기록보관소가 ‘구매 또는 이용허락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 지정 단말기를 통해 공중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자국법 내에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은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복제행위가 직간접적으로 비상업적인 경우에 회원국들이 복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위 시설에서 조사나 개인의 연구를 위하여 지정 단말기를 통해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4.3 국내법

4.3.1 연혁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당시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이라는 단일 목적을 규정하였다. 공정이용 법리의 등장은 「세계저작권협약」 가입이 계기가 되었다. 1986년 12월 31일 「저작권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1조에 목적 조항으로 ‘공정한 이용 도모’라는 공정이용 법리를 새롭게 추가하였고, 저작권자의 권리제한 규정을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로 확대 및 구체화하였다.

2000년 1월 일부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 6134호)은 제28조 제2항에 컴퓨터를 통한 열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의 복제와 전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도서관으로 하여금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해당 도서관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의 이용자 열람을 위해서 보유 장서를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술적 보호조치만을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었던 개정법은 곧바로 이해당자들 사이에 큰 논쟁을 일으켰다. 개정된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저작권자는 물론 출판업계 등 관련 산업종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고, 출판업계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우리 협회 의견서’²⁾를 통해 신설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 당시 출판업계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우리 협회 의견서’에서 법 제28조 제2항이 국제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지속적인 사용과 복제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재하는 점을 들어 지식재산권의 심대한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조항이 헌법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즉각적 삭제를 요구하였다(정종진 2001, 16-17).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2000년 7월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917호)의 일부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3조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복제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저작권법』에 명시된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엄격히 한정시켰다. 개정법의 도서 복제와 전송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이후 2003년 5월 27일 『저작권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제28조의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관한 조항은 여러 단서 조항들을 수반하게 된다. 2003년의 일부개정에 대해 박영희(2008, 201-202)는 과도하게 저작권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전자도서

관 구축 사업 등 정보유통 및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고, 배대현(2010, 160)은 이를 출판권자의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 디지털 친화적 환경을 저버렸다고 비판하였다.

『저작권법』은 2009년 일부개정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이전까지의 『저작권법』이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에서, 2009년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개정되었다. 법의 목적에 ‘관련 산업’이란 용어가 추가된 것이다. 2011년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10807호)은 이전 법률에서 모호하게 사용되던 ‘공정한 이용’이라는 용어의 구체성을 담은 제35조의3을 신설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12137호)에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는 열거방식으로 저

<표 2>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 권리제한 및 공정이용 규정의 변천과정

구분	목적	저작권재산권 제한	도서관 관련 저작권재산권 권리제한 조항 (접자도서관 등의 관련 조항 제외)	공정이용 조항
1957.1.28. 제정 (법률 제432호)	제1조 (목적) 본 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여 민족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4조 (비침해행위)	없음	없음
1986.12.31. 전부개정 (법률 제3916호)	제1조 (목적)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	제22조~ 제35조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없음

구분	목적	저작재산권 제한	도서관 관련 저작재산권 권리제한 조항 (점자도서관 등의 관련 조항 제외)	공정이용 조항
2000.1.12. 일부개정 (법률 제6134호)	동법률	동법률	제28조 ②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없음
저작권법시행령 2000.7.27.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6917호)	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법 제28조 제1항 본문(법 제60조 제2항 및 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에 한한다.		
2003.5.27. 일부개정 (법률 제6881호)	동법률	동법률	제28조 ① [...]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② [...]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 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없음
2006.12.28. 전부개정 (법률 제8101호)	동법률	제23조~ 제38조	제31조로 변경되었으나 내용상 변화는 없음	없음
2009.4.22. 일부개정 (법률 제9625호)	제1조 (목적) [...]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 <개정 2009.4.22.>	동법률	제31조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없음
2011.6.30. 일부개정 (법률 제10807호)	동법률	동법률	동법률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작재산권의 권리제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민감한 저작권 관련 법령의 특성상 간극이 발생하기 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서계원 2010, 160).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2011년 일부개정된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일반 조항을 신설한다. 따라서 현행 법령 상에는 저작권자의 권리제한이라는 열거 규정인 제31조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일반 조항인 제35조의3을 함께 고려하여 도서관에게 허용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4.3.2 『저작권법』 제31조

현행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주목하는 공정이용을 포함한 도서관 디지털 장서 활용의 핵심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두고 연구자에 따라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31조 제1항은 첫째,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제1호), 둘째, 도서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셋째,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제3호), 도서관에 보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와 셋째의 경우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금지하며, 오직 도서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허용한다. 반면,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해당 도서관 관내에서 또는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희윤(2011)은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의 개정안 연구’를 통해, 제31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간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제1항에 따르면 도서관은 조사·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된 도서를 복제(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반면에 단서조항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제2항과 제3항은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의 복제를 허용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윤희윤 2011, 9).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와 달리, 박영희(2008), 송선기(2005), 홍재현(2004), 홍재현, 정경희, 이호신(2005) 등 다수의 선행 연구는 조항 간의 정합성보다는 개별 조항의 단서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 분석, 보상금 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한 도서관 정보자원 활용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국립중앙도서관(2014)에서 발간한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은 이러한 다수 연구자의 해석을 반영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서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지침은 『저작권법』 제31조가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를 디지털로 복제하고, 전송에 따른 열람이 가능하도록 허락하고”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공공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도서관에 부여한 이용권”으로 보았다(국립중앙도서관 2014, 73). 구체적으로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이 “도서관은 보관된 도서 등을 도서관 내 혹은 다른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가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각 도서관이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4, 40).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가 ‘다른 도서관의 요청’이 절판자료에 관한 것이라도 디지털 파일로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제31조 제3항 또한 ‘타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 즉 화면상에서 볼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허용할 뿐, 디지털 파일 제공까지를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4, 129).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2012)에서 발간한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에서도 도서관 소장 자료의 디지털 복제에 대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이러한 디지털

파일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요건에 따라 이용자들이 연구의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디지털 형태의 파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도서관이 아날로그 형태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자료를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84).

이상의 지침들을 살펴보면 이용자에게 장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아날로그 장서를 디지털 복제하여 이용자가 자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제3항에 따라 자관에서 타관으로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 전송하는 행위가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의 범조항 간 모순에 관하여 자문을 구한 법률전문가 3인은 공히 제31조 규정들이 법적 다툼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장서 제공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³⁾ 본 연구자가 면담한 법률전문가들은 제31조 제1항을 협의로 해석한다면 디지털 복제는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 제2호)”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법 자체로서 제2항 및 제3항과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설령 협의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제공’과 ‘열람’을 다른 행위로 보고, 제1항 제1호에서 제공 시에는 디지털 복제 금지로, 제2항 및 제3항에

3) 본 연구는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의 해석을 위해 현직 법조인 3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률 전문가와의 면담은 2015년 4월 16일과 17일, 7월 13일 각각 이루어졌으며, 면담시간은 각각 약 1시간이었다.

서 열람 시에는 디지털 복제 가능으로 보는 것은 임의적인 해석이며, 궁극적으로 '열람'이 '제공'에 포함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에 '제공'과 '열람'에 관한 별도의 정의가 부재하므로, 재판 시 '제공'은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되게 된다. 통상적인 의미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공'이란 "무엇을 내주거나 갖다 바침"을 의미한다. 결국 이것이 물리적인 종이형태의 복제물을 이용자가 소유할 수 있도록 교부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람과 제공이 교차점이 없는 전혀 다른 행위라면 '제공'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현행법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열람'이 '제공'에 포함된다면, 제1항에서 제1호에 관하여 디지털 복제를 금지한 조항과 제2항 및 제3항은 서로 모순된다.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복제나 전송을 할 경우에도 단서 조항에 따라 동시 열람자 수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제2항),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제3항),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 경우에도 복제 또는 전송을 허락하지 않는다(제4항). 또한, 제1항 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보유 장서를 복제하거나, 제3항에 따라 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제5항), 모든 디지털 형태의 복제 또는 전송에 있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

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제7항).

여기에 법령에서 복제 대상을 일컬어 사용하는 '보관된 자료'의 의미가 상당 기간에 걸친 관리를 전제한다(하용득 1988, 202-203)는 점에서 디지털 복제의 범주는 더욱 좁아진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상 디지털 장서의 디지털 복제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 복제에도 다수의 현실적 그리고 잠재적 제약과 위험이 따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5.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 관련 판례분석: 다름슈타트 공과대학 대 유겐 울머 출판사

공정이용은 형평법상의 조리(equitable rule of reason)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각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House of Representatives 1976, 65). 다시 말해, 공정이용의 법리는 성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 적용 시에는 각각의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이호열 1997, 279). 법원이 그것이 공정이용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그것이 정말로 공정이용인지를 예단하기 어렵다(Hirtle 2003). 따라서 판례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보유 장서의 디지털화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작권법 체제와 크게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해준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에 주목하고

자 한다.

다름슈타트 공과대학(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은 대학 구성원뿐만 아닌, 일반 대중들도 이용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의 일환으로 도서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열람석(electronic reading point)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 전자열람서비스는 2009년 1월경부터 유겐 울머(Eugen Ulmer) 출판사가 발간한 교재 『근대사 입문(Einführung in die neuere Geschichte)』을 포함하게 되었다.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은 전자열람서비스를 위해 책을 디지털화하였다. 도서관이 자신의 보유 장서 수보다 더 많은 사본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전자열람서비스 이용자들은 도서관으로부터 저작물 일부 또는 전체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었다. 2009년 1월 29일 유겐 울머 출판사는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에게 해당 교재의 e-Book을 구입하고 이용하도록 제안하였으나, 대학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유겐 울머 출판사가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Judgement of the Court (Fourth Chamber) of 11 September 2014, Case C-117/13, 4-5).

2011년 3월 6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지방법원은 저작권자와 기관은 「저작권과 인접권리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제52b조가 규정한 바의 적용을 위해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에 있어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다름슈타트 공과대학이 소장한 교재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금지시켜달라는 유겐 울머 출판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도서관과 출판사 양측 모두 이러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양측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구받은 독일연방법원(Bundesgerichtshof)은 예비판결을 위해 다음 3가지 쟁점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조회한다. 유럽사법재판소에 건내진 물음은 첫째,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의 체결을 기관에 요청한 경우, 유럽연합 저작권지침(Copyright Directive 2001/29/EC) 제5(3)(n)조의 “판매와 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둘째, 터미널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의 제5(3)(n)조는 회원국들이 기관에 소장된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권리를 주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 셋째,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제5(3)(n)조에 의거 회원국이 규정한 권리가 터미널의 이용자들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종이로 출력하거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였다.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제2조와⁴⁾ 제3조⁵⁾는 각각 ‘복제권’과 ‘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기타

4) 제2조(복제권) 회원국들은 다음 각 항목의 전체나 일부를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a) 저작자에게는 저작물 (b) 실연자에게는 실연의 고정물 (c)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 (d) 영화를 최초 고정한 제작자에게는 영화의 원본과 사본 (e)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혹은 유선전신이나 공중파에 의해서 송신되는 것이건 관계없이 방송의 고정물.

5) 제3조(저작물의 공중전달권 및 기타 대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

1.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대상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여 저작권자들에게 그들 저작물 "전체나 일부를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제5조를 통해 회원국에게 이러한 권리의 특별한 예외와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공도서관이다.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기록보존소에서 저작물에 표시된 구매 또는 이용허락 조건을 따르지 않고 지정된 단말기에 의하여 공중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이용인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전달권, 기타 공중이용에 제공할 권리 등에 예외 또는 제한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개인적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전달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독일연방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이러한 경우의 의미와 범주에 대해 물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2014년 9월 11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Judgement of the Court (Fourth Chamber) of 11 September 2014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from

Bundesgerichtshof—Germany)—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 v. Eugne Ulmer KG (Case C-117/13), 1).

1. 정보사회에서 저작권과 관련 권리들의 조화에 대한 2001년 5월 22일 유럽연합 지침(2001/29/EC) 제5(3)(n)조에 규정된 '구매 또는 이용허락 조건'의 개념은 저작권자와 해당 조항에 언급된 공적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과 같은 기관은 기관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해당 저작물 관련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유럽연합 지침 2001/29의 제5(3)(n)조, 그리고 제5(2)(c)조는 만약 도서관 내 지정 단말기 방식을 통해 그 저작물들을 이용자들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 목적으로 그와 같은 재생산 행위가 필요할 경우, 회원국들이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 공적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에게 도서관 장서에 포함된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는 권리를 가로막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유럽연합 지침 2001/29의 제5(3)(n)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적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에 설치된 지정 단말기로부터 이용자에 의해 저작물을 종이로 인쇄하거나 USB 저장장

통신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저작자에게 부여한다.

2.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다음 각 항목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a) 실연자에게는 실연의 고정물 (b)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 (c) 영화를 최초 고정한 제작자에게는 영화의 원본과 사본 (d) 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이 케이블이나 위성 혹은 유선전신이나 공중파에 의해서 송신되는 것이건 관계없이 방송의 고정물
3.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이 조에서 기술하는 공중전달 행위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의하여 소진되지 않는다.

지에 저장하여 반출하는 행위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유럽연합 지침의 제5(2)(a)조 또는 제5(2)(b)조를 이항한 국내법 아래 각각의 개별 사례에서 허가될 수 있다.

이 판결은 저작권자가 도서관에 저작물의 사용을 위한 이용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도서관은 유럽연합 저작권지침 제5(3)(n)조의 예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는 부수적 권리가 저작물의 일반적 부당이용과 충돌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법적 이익에 불합리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무관은 이 판결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만약 도서관이 소장 저작물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면, 도서관이 소장 저작물을 전용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의 권리가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Opinion of Advocate General Jääskinen, 2014. 6. 5. Case C-117/13). 같은 맥락에서 판결문 27번째와 28번째 문단은 “유럽연합 지침 2001/29의 제5(3)(n)조는 공적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의 핵심 사명인 지식의 보급을 통해 조사와 개인적 연구를 진흥하여 공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의 유겐 울머 출판사의 해석은 지침이 규정한 제한과 관련된 기관을 거부하고, 공익의 증진과 기관의 핵심 사명을 구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공공도서관이 개

인이 전용 단말기로부터 저작물을 종이로 출력하거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개인에게 활용가능하게 제공된 디지털 사본의 새로운 사본을 만들 목적으로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재생산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재생산 행위는 전용 단말기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나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 자체가 아닌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도서관이 가지는 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유럽연합 저작권지침에 규정된 제한과 조건 안에서 저작권자의 고유한 재생산 권한의 예외와 제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도서관 이용자들이 전용 단말기로부터 저작물을 종이로 출력하거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6. 시사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제5(3)(n)조의 해석을 통해 내린 2014년 유럽재판소 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계약 체결 여부나 저작권자의 허락에 상관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장한 장서를 디지털화할 권리를 도서관에 부여하는 것을 넘어, 출판사에서 e-Book을 판매하고 있더라도 유효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부당이용과도 충돌하지 않는

다고 명시한 이 판결은 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 체계와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도서관의 사명이 지식 보급과 연구 지원을 통한 공익의 추구라는 점을 들어 도서관의 권리를 옹호한 유럽 사법재판소 법무관의 공식 의견서는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한 발 더 나아간 입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도서관에서의 포괄적인 디지털화를 허용하였다가, 해당 법률이 시행되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국립도서관 등을 제외한 대다수 도서관에서의 디지털화를 제한하였다. 이렇게 개정된 조항의 골자는 2003년 「저작권법」 일부개정에서도 반영되어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졌으며, 앞서 논했듯이, 도서관 디지털 장서의 활용에 관한 범주화 간의 모순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성문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공정이용 조항은 재판 상항변으로 사용된다(이호열 1997, 279; 정진근 2013, 56). 따라서 기존의 열거 조항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제한 범위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일반 조항인 제35조의3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은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제31조를 넘어서는 디지털 복제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서관의 사명과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를 보여준 유럽사법재판소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겁다. 도서관이 정보 평등을 위한 기관이

며,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는 다른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해 주었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에 앞서 공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법의 유무를 떠나 창작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가치이고,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저작권 법제도의 역사로부터 증명되어온 사실이다. 도서관 역시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서까지 이용을 활성화 하거나,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부당'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서의 디지털화'를 공정이용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선행단계로 보고, 첫째, 공공기관인 도서관이 이용자들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내 지정된 전자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유 저작물을 재생산할 권리, 즉, 도서관 장서 등을 디지털화할 권리에 대한 규정들이 상호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명료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앞서 논하였듯이,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해당 도서관 관내에서 또는 다른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도서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31조 제1항과의 정합성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따라서 타 조항들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를 금지 한 현행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의 전면적 개정이 고

려되어야 한다. 단, 보유 장서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도서관의 권리가 이용자에 의해 저작물을 종이로 인쇄하거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보유 장서의 디지털 복제를 금지한 제31조 제4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31조 제4항은 관내 및 관외 열람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제31조 제2항, 제3항)는 물론, 자관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1조 제1항 제2호)에도 디지털로 판매되고 있는 책의 디지털 복제를 막고 있다. 지정된 전자열람석을 통하여 디지털화된 소장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의 권리이다. 만약 아날로그와 디지털 형태 모두로 출판된 책이 있다고 한다면, 도서관은 동일한 장서를 디지털로 제공하기 위해 다시금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설령 그것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전자열람석을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아날로그 인쇄와 디지털 파일 반출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명확히 전제된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7. 맺는 글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법률적 틀이 마련되었던 2000년대 초반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는 저작물의 보존과 이용을 위

하여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법제도를 통해 합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은 끊임없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하고, 보호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는 이러한 변화의 시점이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이용자 서비스를 위해 장서의 디지털화를 허용함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가? 그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리는 얼마나 침해받을 것인가?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당하는 공익의 크기는 어떠한가? 정보접근성 확대 등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단인 '장서의 디지털화'는 현시점에서 저작권자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수단인가? '도서관 내 지정된 전자열람석 등을 통한' 등의 제한적인 방식임에도 이러한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부적절한 요구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국가권력기관뿐만 아니라 도서관계, 저작권자 등 관련자들의 논의가 요구된다.

도서관에게 부여된 사명과 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사회가치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한 현실적인 방도와 한계를 논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그 사명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사회적 토대를 제공하여,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4.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 준비기획단. 2007. 『디지털장서 관리 및 연구 개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디지털도서관준비기획단.
- 김병일. 2009.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종철, 김영석. 2012.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349-369.
- 김형렬. 2001.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23: 43-56.
- 박영희. 2008.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정보법학』, 12(2): 183-211.
- 배대현. 2010. 현행 저작권법상 디지털 저작물 보존과 문화·산업발전의 관계. 『산업재산권』, 32: 155-192.
- 서계원. 2010. 공정이용 법리(fair use)의 국내법 편입에 대한 실증적 연구. 『법학연구』, 51(4): 159-192.
- 실문원. 2005. 과학기술 분야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정책연구. 『정보관리연구』, 36(4): 23-49.
- 송선거. 2005.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법리. 『사대도협회지』, 6: 223-244.
- 오일석. 2013.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4(3): 579-618.
- 윤선영. 2000. 지식사회의 저작권: 정보공유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법.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1(2): 39-48.
- 윤희윤. 2007.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과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79-99.
- 윤희윤. 2010.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277-301.
- 윤희윤. 2011.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의 개정안 연구. 『정보관리연구』, 42(2): 1-21.
- 이수상. 2013. 『디지털도서관운영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이순자. 1988. 저작권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25(5): 23-29.
- 이호신. 2014. 도서관서비스의 저작권 면책과 공정이용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387-413.
- 이호열. 1997.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국제적인 동향. 『안암법학』, 6: 275-298.
- 장덕현. 2010. 공공도서관 디지털 정보자원요소 중요도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413-433.
- 정경희, 이두영. 2001.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8(4): 127-142.
- 정종진. 2001. 저작권법 개정에의 대응책 보고. 『출판문화』, 2001-5: 14-19.
- 정진근. 2013. 저작권의 공정사용원칙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개선방안. 『계간저작권』, 26(2): 51-77.
- 정진근, 김형각. 2010. 저작권법상 도서관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창작과권리』, 59: 146-182.

- 최원목. 2007. 『국제법강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하용득. 1988. 『저작권법』. 서울: 법령편찬보급회.
-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홍재현. 1999.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정보관리학회지』, 31: 31-48.
- 홍재현. 2004.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38(1): 93-119.
- 홍재현, 정경희, 이호신. 2005.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505-525.
- Brazier, Caroline. 2013. *born.digital@british.library: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implementing a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online]. [cited 2015.2.10]. <<http://library.ifla.org/222/1/198-brazier-en.pdf>>.
- Davies, Gillian. 2002. *Copyright and the public interest*. London: Sweet & Maxwell.
- The 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2011. *The Washington Declar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2011*. [online]. [cited 2015.2.10]. <<http://infojustice.org/washington-declaration-html>>.
- Hirtle, Peter. 2003. *Digital Preservation and Copyright*. [online]. [cited 2015.2.15]. <http://fairuse.stanford.edu/2003/11/10/digital_preservation_and_copyp/>.
- Hoberman, H. S. 1987. "Copyright And The First Amendment: Freedom or Monopoly of Expression?" *Pepperdine Law Review*, 14(3): 571-600.
- House of Representatives. 1976. *Copyright Law Revision (House Report No. 94-1476)*. [online]. [cited 2015.5.11]. <http://www.copyright.gov/history/law/clrev_94-1476.pdf>.
- Kaplan, Benjamin. *An unhurried view of copyright*. Clark, NJ: Lawbook Exchange, Ltd., 2008, c1967.
- Koulouris, Alexandros and Sarantos Kapidakis. 2012. "Policy route map for academic libraries' digital content."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4(3): 163-173.
- Patterson, L. Ray. 1992. "Understanding Fair Us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5(2): 249-266.

[참고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online]. [cited 2015.7.13]. <<http://stdweb2.korean.go.kr>>.

외교부. [online]. [cited 2015.3.15].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business/definition/index.jsp?menu=m_30_50_10〉.

특허청. [online]. [cited 2015.3.15].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9306&catmenu=m09_03_0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Dae-Heon. 2010. "The Digital Preservation, the Creative Industries and the Cultural Progress under the Existing Copyright Act."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32: 155-192.
- Chang, Durk-Hyun. 2010. "A Study o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413-433.
- Choi, Won-Mog. 2007. *Lecture for International Law*.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Ha, Yong-Deug. 1988. *Copyright Law*. Seoul: the Law Compilation Committee.
- Hong, Jae-Hyun. 1999. "Issues of Copyright Relating to Constructing and Managing Digital Library in the Internet 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 31-48.
- Hong, Jae-Hyun. 2004.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for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93-119.
- Hong, Jae-Hyun, Kyoung-Hee Joung, and Ho-Sin Lee. 2005.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Copyright Guideline on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n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505-525.
- Jeong, Jin-Keun. 2013. "Study on Problem and Proposal on Copyright Fair Use Doctrine in Korea." *Copyright Quarterly*, 26(2): 51-77.
- Jeong, Jin-Keun and Hyoung Gak Kim. 2010. "A Study about fair dealing clauses for library in Copyright Law in U.S. and Korea." *Creation & Rights*, 59: 146-182.
- Jeong, Jong-Jin. 2001. "The Report of Response to the Copyright Act amendment." *Journal of Publishing and Cultural*, 2001-5: 14-19.
- Jung, Kyung-Hee and Too-Young Lee. 2001. "A Study on Limitations on the Right of Reproduction and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Digital Networked Environment." *Journal*

-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8(4): 127-142.
- Kim, Byung-Il. 2009. *A Research for improvement on The Program Copyright Restrictions*.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im, Hyoung-Ryel. 2001. "Digital library and Copyright." *Digital library*, 23: 43-56.
- Kim, Jong Chul and Young Seok Kim. 2012. "A Study on the Provision of the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f the Korean Copyright A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349-369.
- Korea Copyright Commission. 2012. *2012 Copyright counselling practice 100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Copyright Act*. Seoul: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nline]. [cited 2015.3.15].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9306&catmenu=m09_03_01>.
- Korea Library Association Library Science Glossary Editorial Committee.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Ho-Sin. 2014. "A Study on Copyright Exemption and Fair Use on Librar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1): 387-413.
- Lee, Ho-Yeol. 1997. "Trends in International Law to Limit The Exclusiv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Anam Law Review*, 6: 275-298.
- Lee, Soon Ja. 1988. "A Study on the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in library."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25(5): 23-29.
- Lee, Soo-Sang. 2013. *Digital Library Management*.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line]. [cited 2015.3.15].
<http://www.mofa.go.kr/trade/treatylaw/treatybusiness/definition/index.jsp?menu=m_30_50_10>.
-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online]. [cited 2015.7.13]. <<http://stdweb2.korean.go.kr>>.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Copyright manuals for libraries and librarians*.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 Oh, Il Seok. 2013. "A Study on Amending Library Exemption Clauses in the Korean Copyright Code." *The Law Research institute of Hongik Univ.*, 14(3): 579-618.
- Park, Young-Hee. 2008. "Copyright Protection and Fair Use in the Digital Library."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Law*, 12(2): 183-211.
- Seol, Moon-Won. 2005. "A Study of Digital Archiving Policies for National S&T Information

- Resource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6(4): 23-49.
- Song, Seon-Gi. 2005. “Principle of Copyright Law and Fair Use.” *Journal of the Korean Private University Library Association*, 6: 223-244.
- Sub, Kye-Won. 2010. “An Empirical Study on Adoption of Fair Use to Copyright Law in Korea.” *Law Review*, 51(4): 159-192.
- Task For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or National Digital Library. 2007. *Digital Collection Management and Research Development*. Seoul: Task For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for National Digital Library.
- Yoon, Hee-Yoon. 2007. “Methods and Strategies of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79-99.
- Yoon, Hee-Yoon. 2010. “A Comparative Analysis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277-301.
- Yoon, Hee-Yoon. 2011. “A Study on the Revision of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Copyright Law of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2): 1-21.
- Yoon, Sun-Young. 2000. “Copyright in the Knowledge Society: Copyright Law Relating to Information Sharing.”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1(2): 39-48.

